

서울특별시마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8. 7. 2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8. 8. 4.
-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8. 9. 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고준기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마포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보호의 종류와 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첨부에서는 '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지원기반 조성 을 위하여 필요한 공적부조를 시행해오고 있지만,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 되지 못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법적 근거의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구호사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 이번 조례제정은 그 시행근거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일부 저소득 주민 구호 및 지원 시책에 대하여 법률적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이 있음.
-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생활 보호법등 관계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을 보조하는 것이 생활보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97. 4. 25 선고(96후244판결)에서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이 지방재정법과 생

활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별도 지원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동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내용과 관련하여, '98년도 마
포구 예산에 편성된 독거노인 정기방문활동비(예산액: 41,184,000원)와 무의탁 할
머니 결제비(예산액: 3,500,000원)는 현재 사업계획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동조의 보호내용에 "무의탁 노인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닌가?
- 답변요지(고종기 사회복지과장) : 지원대상자는 보호대상자·보호내용·보호대상자
의 결정방법 등이 조례에 있으므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8. 9. 3. 한 대운 위원 외 1인
- 나. 수정이유 : 추진중인 사업 중 보호내용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 다. 수정 주요 골자 : 무의탁 노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6항)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1998. 9. 3.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 이유

추진중인 사업중 보호내용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2. 수정 주요 골자

무의탁 노인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무의탁 노인 지원

안 제4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조 제1항 제6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원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p>제3조(보호내용)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p>1-5.(생 략) <u>(신 설)</u> <u>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u> ②(생 략)</p>	<p>제3조(보호내용)①----- ----- -----</p> <p>1-5.(원안과 같음) <u>6. 무의탁노인 지원</u> <u>7. (원안 제6호와 같음)</u> ② (원안과 같음)</p>	*기히 추진중인 사업 중 보호내용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
<p>제4조(보호대상자의 결정) ①-⑤(생 략) <u>(신 설)</u> ⑥ (생 략)</p>	<p>제4조(보호대상자의 결정)①-⑤(원안과 같음) <u>⑥ 제3조제1항제6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u> ⑦ (원안 제6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안)

의 안 번 호	210
------------	-----

제출일자 : 1998.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사유

마포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보호의 종류와 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1996. 12. 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4. 참고사항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
2.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조 (보호내용)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명절보상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보호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단체로 한다.

- ④ 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 자와 서울자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 ⑤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⑥ 기타 보호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